

## | 식 률 검 역 |

#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돋기 위해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을 현행시행안과 개정안, 개정 사유로 정리하여 표로 마련하였으니 참고 하십시오.

(출처 : 국립식물검역소 <http://www.npq.go.kr>) - 편집자주-

(주의) 표는 개정안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개정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있으며 반드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목재포장재 수출) 수출화물의 목재 포장재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 수출하거나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3조(목재포장재 수출)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수입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크로마이드 훈증으로 소독처리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 수출하거나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하는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국의 검역요건의 용어와 소독처리에 대한 종류,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발행하는 곳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함</li> </ul>
제4조(수출검사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u>지정된 소독처리업체</u> 에서 수입국 검역요건에 적합한 소독처리를 한 후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소독작업결과서를 재 사용할 수 있으며, 재 사용시 재고량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③〈신설〉	제4조(수출검사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u>식물방역법시행규칙</u>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식물검사신청서에는 소독처리업체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독작업결과서 뒷면의 목재포장재 재고량 확인표의 확인란에 식물방역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목재포장재 재고량 확인을 수출업자나 대리인의 확인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항을 구분하여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li> </ul>

<p>② 제1항의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식물방역관은 소독작업결과서의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만 표지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이 확인 서명할 수 있다.</p> <p>④ 식물방역관은 제1항에 의한 수출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소독작업결과서의 확인으로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항변경과 문맥수정</li> </ul>	
<p>제5조(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 (생 략)</p> <p>제3장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의 관리</p> <p>제6조(소독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 ①~②(생 략)</p> <p>③ 지·출장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시설조사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p> <p>④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별도의 검사신청 없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할 수 있다. <u>&lt;신 설&gt;</u></p>	<p>제5조(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 (현행과 같음)</p> <p>제3장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의 관리</p> <p>제6조(소독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지·출장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시설조사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3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안내와 별표4의 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사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p> <p>④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별도의 검사신청 없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산(HCN)소독만 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열처리소독과 마크사용을 위해 소독처리마크 사용안내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시 주의사항을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교부시 신청인에게 통보함</li> <li>○ 청산으로는 목재포장재를 소독할 수 없으므로 청산소독만 하는 방제업체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li> <li>○ 별표 3의 내용을 명시함</li> </ul>	
<p>제7조(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및 사용) ①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업자는 별표 3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서를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소독처리마크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p> <p>②(생 략)</p>	<p>제7조(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및 사용) ①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업자는 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안내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서를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소독처리마크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소독을 신설된 [별표4] 열처리시 주의사항에 따라 행하도록 함</li> <li>○ 소독처리업자가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소독처리관련자료에 대해 명시를 명확하게 함</li> </ul>	
<p>제8조(소독처리업자의 의무) ①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고, 작업일지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작업일지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공급내역 등 소독처리 관련자료를 최소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8조(소독처리업자의 의무) ① 소독처리업자는 별표4의 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사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소독처리한 후 지체없이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고, 작업일지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의 목재포장재소독처리작업일지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소독작업결과서(열처리업체는 목재중심부 온도지동기록표 포함)와 공급내역 등 소독처리 관련자료를 최소한 1년</p>		



## | 식 물 검 역 |

②~③ (생 략)

④ (신 설)

제9조(소독처리업체 점검) 지·출장소장은 관내 신고된 소독처리업체의 소독 시설·장비의 상태, 소독처리마크 표지, 소독처리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 시설을 폐업 신고할 경우 증명서와 소독처리마크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처리된 소독처리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제10조(소독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  
 ①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개조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출장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자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제작하여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또는 소독처리마크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증명서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제11조(소독처리증명의 중단) ① (생 략)  
 ② 지·출장소장은 제7조1항 및 제8조를 위반하였거나 제9조에 의한 점검결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독처리하거나 소독증명한 소독처리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되어 재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8조제2항의 소독작업 결과서 발급 및 제7조의 소독처리마크 사용을 중단조치 하여야 한다

③지·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사항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자체없이

제10조(소독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

①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개조·이전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출장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자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열처리책임자 기재사항 변경시는 제외

3. (현행과 같음)

제11조(소독처리증명의 중단) ① (생 략)

② 지·출장소장은 제7조1항, 제8조 및 제10조1항을 위반하였거나.....

- 소독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명시함

- 열처리책임자 및 소독처리마크 신고증 기재사항 변경시는 재교부 생략도록 하여 업무량 감축 및 민원편의 도모

- 규정 제10조제1항의 소독처리시설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이행 위반시 중단조치를 하도록 규정

- 업체 소독증명 중단·재개 및 폐업 조치를 관할 지·출장소에서 본소로

## | 식물검역 |

보고하여야 한다.

항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와  
동시에 각 지·출장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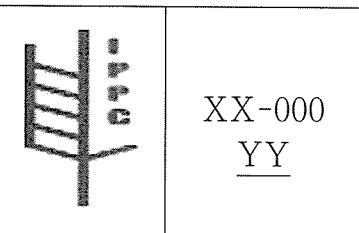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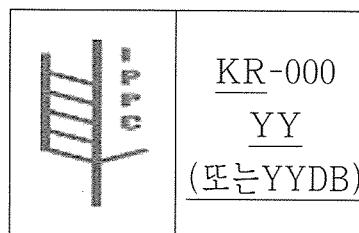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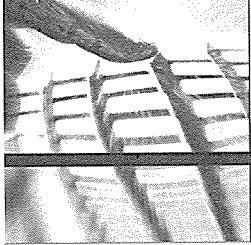
직접 보고와 동시에 각  
지·출장소에 통보토록  
함으로서 보고 및 통보절  
차 간소화 함

### (열처리 시설 시행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 (생·략) 열처리시설의 요건</p> <p>1. 열처리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온도감지기(온도센서)를 포함하여 교정성적서를 받은 장치로 오차 범위는 <math>\pm 0.5^{\circ}\text{C}</math> 이하이어야 함</li> <li>- 온도 자동기록장치(온도감지기 포함)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의 교정주기에 따른다.</li> </ul> </li> </ul>	<p>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 (현행과 같음) 열처리시설의 요건</p> <p>1. 열처리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온도감지기(온도센서)를 포함하여 교정성적서를 받은 장치로 오차 범위는 <math>\pm 0.5^{\circ}\text{C}</math> 이하이어야 함</li> <li>- 온도 자동기록장치(온도감지기 포함)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의 교정주기(1년)에 따른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주기를 명확하게 명시함</li> </ul>

### (소독처리마크 시행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u>소독처리마크</u></p> <p>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p>  <p>1.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소독처리마크 사용 안내</u></p> <p>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p>  <p>1.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변경</li> <li>○ KR은 우리나라 국가코드로서 변함이 없음</li> <li>○ 수피제거 했음을 뜻하는 DB 마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표시함</li> </ul>



## | 식물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ISPM No 15, 부록 II)</li> <li>○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예: korea⇒ KR)</li> <li>○ 000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확인번호)</li> <li>○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예 : HT, MB)</li> </ul> <p><u>2. 소독처리업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 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li> <li>○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여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li> <li>○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템프, 소인 등으로 표시</li> </ul>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ISPM No 15, 부록 II)</li> <li>○ KR: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KR)</li> <li>○ 000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확인번호)</li> <li>○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예 : HT, MB)</li> <li>○ YYDB: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예 : HTDB, MBDB)</li> <li>○ 마크 제작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 사용</li> </ul> <p><u>2. 소독처리마크사용 사용방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처리마크에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 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음</li> <li>○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li> <li>○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여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li> <li>○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템프, 소인 등으로 표시</li> <li>○ 수피가 제거되고 소독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HTDB(MBDB) 마크 사용</li> <li>○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li> <li>○ 소독처리마크는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처리 되었으며 수피 제거 했음을 뜻하는 마크 설명 추가</li> <li>○ 마크제작에 관한 사항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처리마크사용방법으로 제목 변경</li> <li>○ 수피제거 표시마크사용방법 추가</li> <li>○ 마크 사용신고방법 추가</li> <li>○ 마크사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후에 사용토록 안내</li> </ul>
--	---	--

### (목재포장재 열처리 주의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u>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사항</u></p> <p><b>1. 열처리 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처리 시설이 열처리시설 요건에 적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구역 식물검역소에 통보한다.</li> </ul> </li> <li>○ 온도센서는 목재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열처리 시설내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li> <li>○ 측정된 목재중심부 온도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이 출력이 가능하며, 기록지의 표시 방법(처리 일자 및 시간, 온도, 눈금 등)이 적절하여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li> </ul>	○ 열처리시설업자의 열처리소독시 주의할 사항 신설

## | 식물검역 |

- 온도측정장치(온도센서 포함)는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세칙 통합고시'의 교정주기에 따른다.(1년)

### 2. 목재포장재 열처리

- 온도센서는 열처리 시설 내의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지면에서 10~20cm 지점 등)에서 측정하되 열처리되는 목재포장재 중 가장 두꺼운 목재 중심부 온도를 측정해야 하며, 온도센서 설치시 온도센서의 굽기에 맞도록 천공을 하고 외부 공기가 직접 온도센서에 전달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고내 목재포장재의 균일한 열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열처리 시설 고내의 온도가 균일하도록 송풍기(순환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 각재, 판재 등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을 열처리 할 경우에는 각각의 목재 사이에 열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간목(사이목)을 사용하여 열기가 균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열처리시설 지면에서 높이 20cm 정도의 받침목을 설치하여 그 위에 열처리대상 목재를 적재하여 열처리를 실시하고, 시설내의 열처리 취약부위까지 열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 열처리는 목재중심부 온도가 56°C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하되 중심부 온도 56°C에 도달되는 시간이 충분하게 되도록 한다.
- 규정된 열처리를 하고 열풍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열처리실 개방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개방하여 잡열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

### 3. 열처리된 목재포장재의 관리

-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는 규정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 소독처리마크는 지정된 소독처리 업체에서 열처리 시설자 책임 하에 사용한다.
- 열처리 된 목재포장재의 보관 및 관리
  - 열처리 안된 것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하여야 하며,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피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4. 목재포장재 열처리 내역 기록관리

-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매 열처리 건별로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재 열처리 소독작업결과서(목재중심부 자동온도 기록표 포함), 공급내역 등은 보관하여 지정된 시설에서 열처리한 근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 5.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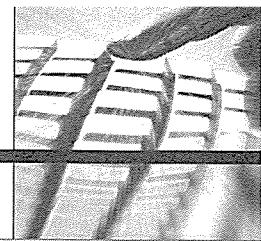
-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공급업체에서 수출하기 전 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관리 부실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열처리소독을 하여야 한다.



실물증권

##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 | 식 률 검 역 |



(재교부신청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u>재교부신청서 (뒷면)</u></p> <p><u>1.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재교부신청시 주의사항</u></p> <p>○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개조·이전 등의 사유로 열처리 시설검사증명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식물검역소에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 변경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받으시고 관할 구역 식물검역소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p> <p>○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처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변경사항을 관할구역 식물검역소에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시고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재교부 신청은 생략합니다.</p> <p><u>2. 소독처리마크신고증 재교부신청시 주의사항</u></p> <p>○ 소독처리마크신고증 재교부신청은 마크가 변경되었거나 추가제작 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 신고증 재교부신청시 주의사항 신설</li></ul>

주의) 수출 전 반드시 국가별 세부 요건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www.npq.go.kr)

목재포장재 검역정보 ⇒ 목재포장재 검역시행국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